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
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21.

발 의 자 : 박대출 · 윤영석 · 김성원  
권영진 · 김용태 · 배준영  
박수영 · 이인선 · 김정재  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 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(이하 “재투자”라 함)하는 경우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,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.

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의8제1항).

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

다)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. 다만,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·③ (생략)
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